

안 내 문

귀사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통제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되어 있는 품목일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므로 전략물자의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무허가 수출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수출신고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이중용도 품목, 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군용물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가판정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판정/허가신청 » 자가판정 시작
» 품목명 선택 » 해당항목 모두 선택 » 판정 » 등록 및 출력

◆ 전문판정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문판정 접수/의뢰 » 판정결과 발급 » 전문판정서 출력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이내 처리)

☞ 위 방법으로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의 결과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각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고 수출절차(허가서 제출)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 허가기관

☞ 이중용도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군용물자 품목 : 방위사업청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및 운반 수단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튼튼한 무역안전망 관세청

전략물자 수출통관 제도를 통해 국가간 무역안전망 관리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2조의2,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함)」별표 2, 3)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통제대상 물품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대상 물품 등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기술)
핵공급국그룹(NSG)	핵무기 (원자력전용, 이중용도품목·기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와 부속품목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생물무기
무기거래조약(ATT)	재래식 무기

수출물품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절차와 허가절차?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간편한 방법으로 판정기관에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자가판정

기업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판정기관 운영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물품 등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을 직접 입력하여 판정받음

* 절차 : 온라인 자가판정 클릭 → 온라인 자가판정 교육영상 시청 → 관련 키워드 검색 및 문답지 응답 선택 → 최종 판정결과 확인

전문판정

기업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판정기관 운영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판정받음

[물품 등별 판정기관]

물품 등	고시 별표	판정기관
이중용도	별표 2 제1부~ 제9부	전략물자관리원
군용물자	별표 3, 별표 2 (군사용에 한함)	방위사업청
원자력	별표 2 제10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 등의 용도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은 상황허가 대상 여부 판정 신청(고시 별표 2의2)

허가절차

위 판정을 받은 결과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허가대상 물품인 경우 아래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 등별 허가기관]

물품 등	고시 별표	허가기관*
이중용도	별표 2 제1부~ 제9부	산업통상자원부
군용물자	별표 3, 별표 2 (군사용에 한함)	방위사업청
원자력	별표 2 제10부	한국원자력위원회

* 상황허가 대상물품인 경우 허가기관에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전략물자 수출절차



전략물자 수출신고 방법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허가 없이 수출하면?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국내 처벌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허가 위반시 처벌내용]

구분	벌칙
국내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 벌금(양벌 적용) ※ 미수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벌되며,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국제 제재	-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3년간 등재 - 미국 등 주요국 거래불가

궁금해요 Q&A

Q 전략물자 해당여부 사전 판정 및 수출허가는 어디에 우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나요?

A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신청기관, 관련 자료 및 법령, 해외조약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략물자관리원 (☎ 02-6000-6400)으로 문의하면 신속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처리됩니다.

Q 판정기관으로부터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 받은 경우 세관에 이 판정서를 제출하면 수출 신고 수리(수출통관) 절차가 더 빨라지나요?

A 네, 판정서를 제출하면 전략물자 여부 심사시간이 단축 되어 신속한 통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략물자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시행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북한반출입시)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안내

-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02-6000-6400
- 군용물자품목→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 1544-1118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www.kinac.re.kr)
☎ 042-860-9700
-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02-3453-4433

전략물자 수출신고 상담 연락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 042-481-1142
- 서울세관 통관검사2과 ☎ 02-510-1146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판정 및 허가 신청 홈페이지 화면

온라인 자가판정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무역거래자가 직접 판정하는 서비스
시작하기

전문판정 신청
전문판정기관에 전략물자 판정을 의뢰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
신청하기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의 경우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서를 취득하여 수출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인증센터 *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